

# 목 차

참 고 서 류 .....	1
I. 권유자·대리인·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.....	2
1. 권유자에 관한 사항 .....	2
2. 대리인에 관한 사항 .....	2
3. 피권유자의 범위 .....	3
4.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.....	3
5. 기타 사항 .....	3
II.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.....	3
□ 이사의 선임 .....	3

# 참고서류

금융위원회 귀중

제 출 일: 2014년 11월 6일  
성 명: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
권 유 자: 주 소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(을지로2가)  
전화번호: 02) 2073-2882

# I. 권유자 · 대리인 ·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

## 1. 권유자에 관한 사항

성명(회사명)	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수량	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비율	회사와의 관계	비고
주식회사 KB금융지주	-	-	본인	-

-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

성명 (회사명)	권유자와의 관계	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수량	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비율	회사와의 관계	비고
윤웅원	회장 직무대행	1,300	0.00	회장 직무대행	
이경재	사외이사	-	-	사외이사	
김영진	사외이사	-	-	사외이사	
황건호	사외이사	-	-	사외이사	
이종천	사외이사	-	-	사외이사	
조재호	사외이사	-	-	사외이사	
고승의	사외이사	-	-	사외이사	
김영과	사외이사	-	-	사외이사	
김명직	사외이사	-	-	사외이사	
신성환	사외이사	-	-	사외이사	
김재열	전무	904	0.00	전무	
이기범	전무	600	0.00	전무	
김상환	상무	-	-	상무	
양종희	상무	914	0.00	상무	
정민규	상무	-	-	상무	
조경엽	상무	500	0.00	상무	
최규설	상무	1,506	0.00	상무	
계		5,724	0.00		

## 2. 대리인에 관한 사항

성명(회사명)	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수량	회사와의 관계	비고
권봉중	278	직원	
송의섭	201	직원	

### 3. 피권유자의 범위

2014년 10월 14일 기준 1,000주 이상 소유한 주주 전체

### 4.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

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확보

### 5. 기타 사항

가. 위임권유기간 : (시작일) - 2014년 11월 11일, (종료일) - 2014년 11월 20일

나.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

-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
-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
-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(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)
-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(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)

다.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

- (일시) - 2014년 11월 21일(금) 오전 10시
- (장소)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(여의도동)  
국민은행 여의도본점 4층 강당

라.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

- (성명) - 송의섭
- (부서 및 직위) - IR부 과장 (연락처) - 02) 2073-2882

## II.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

### □ 이사의 선임

가. 후보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추천인 · 최대주주와의 관계 · 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윤종규	1955.10.13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이사회 (회장후보추천위원회)
총 ( 1 ) 명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 · 약력 ·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약력	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<p>윤종규 (신임) 임기 3년 (2014.11.21~20 17.11.20)</p>	<p>김·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삼일회계법인 부대표</li> <li>- 국민은행 재무전략 기획본부장/부행장</li> <li>- 국민은행 개인금융 그룹 대표/부행장</li> <li>- 김·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</li> <li>- KB금융지주 부사장 (CFO, CRO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후보자 : 해당사항없음</li> <li>- 김·장 법률사무소 : 법률 자문계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계약(한도)기준 8.8억원 이내</li> <li>· 지급기준 1.4억원</li> </ul> </li> </ul>

※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